

중국(China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1년
- 현행법 : 1953년(규정); 1978년, 1995년, 1997년, 1999년, 2005년(지침); 2009년(농어촌지역 연금 가이드라인); 2010년(사회보험법); 2011년(사회보험법); 2014년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연금 통산제 및 통합연금 가이드라인); 2015년(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로자 가입대상 확대); 2018년(보험료 징수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, 개인계좌제도, 비기여제도
 - ※ 기본연금보험제도에는 사회보험연금과 의무개인계좌가 있음. 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연금제도에는 고용주 부담 연금과 개인계좌가 있음
 - ※ 2011년 7월 이후로, 집합운용 등을 포함한 기존 지방 및 지역사회보장제도는 점차 국가의 첫 사회보험에 관한 국법 하에 통합되고 있음. 정부는 도시와 농어촌 거주민들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, 공정한, 통합된 연금 제도를 2020년까지 수립하고자 함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(기초연금보험) : 도시 각종 기업 및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도시 소재 기관 근로자(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및 이민자, 시간제 근로자 포함); 자영자 및 근로자가 없는 소기업 소유주; 임시노동자; 공무원 및 특정 공공부문 근로자
- 비기여 및 개인 계좌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 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) : 16세 이상의 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 거주자
 - 예외 : 학생과 기초연금보험 적용대상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(기초연금보험) : 없음, 또는 지역정부 규제에 의해 결정됨
 - 의무개인계좌(기초연금보험) : 전년도 총 월평균 가입소득의 8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전년도 지역 월 평균임금의 60%임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전년도 지역 월 평균임금의 300%임
 - 비기여제도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) : 없음

- 개인계좌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) : 연간 100~2,000위안(yuan) 사이의 12개 등급 중 선택. 지방 정부는 등급의 수와 단계를 조정할 수 있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(기초연금보험) : 지역 월 평균임금의 12%
- 의무개인계좌(기초연금보험) : 지역 월 평균임금의 8%
- 비기여제도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) : 없음
- 개인계좌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) : 연간 100~2,000위안(yuan) 사이의 12개 등급 중 선택. 지방 정부는 등급의 수와 단계를 조정할 수 있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(기초연금보험) : 지역정부 규제에 근거하여 임금지급액의 최대 20%
- 의무개인계좌(기초연금) : 없음
- 비기여제도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) : 없음
- 개인계좌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)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(기초연금보험) : 중앙 및 지역 정부는 사용자로 기여하며 보조금을 필요에 따라 지급함
- 의무개인계좌(기초연금보험) : 중앙 및 지역 정부는 보조금을 필요에 따라 지급함
- 비기여제도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) : 중앙 정부는 중앙 및 서부지역의 총비용(가입자 당 월 최소 88위안(yuan))을, 동부지역 비용의 50%를 자금함. 지방 정부는 동부지역 비용의 50%를 자금하며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
- 개인계좌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) : 빈곤선 아래의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보험료를 지불함; 지역 정부는 매년 보조금 최소 30위안(yuan)을 각 가입자의 개인계좌에 제공함.(최소 500위안(yuan)을 납부하는 자에게는 최소 60위안(yuan))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(기초연금보험) : 연금은 사회보험연금과 의무개인계좌로 구성됨
- 사회보험연금(중앙정부지침) : 최소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며 남성 및 직업여성인 경우 60세, 비전문직 여성 근로자인 경우 55세, 또는 기타직종 여성인 경우 50세인 자
 - 최소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며 몹시 힘들거나 신체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, 남성인 경우 55세, 여성인 경우 45세인 자
 - 가입기간이 최소 15년이라면 최소연금액이 지급됨
 - 조기연금 :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완전한 장애로 판단된 남성의 경우 50세, 여성의 경우 45세인 자; 최소 가입기간 8~10년이며 몹시 힘들거나 신체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55세, 여성의 경우 45세인 자

- 최소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일반퇴직연령을 도달한 가입자는 15년을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, 연금을 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로 이전 가능함. 기초연금보험제도를 2011년 이전에 가입하였으며 일반퇴직연령 도달 시 최소 10년 이상, 15년 미만의 가입기간이 있는 자는 기초연금 자격을 갖추기 위해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 가능함
- 의무개인계좌(중앙정부지침) : 최소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며 남성 및 직업여성인 경우 60세, 비전문직 여성 근로자인 경우 55세, 또는 기타직종 여성인 경우 50세인 자
 - 최소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며 몹시 힘들거나 신체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, 남성인 경우 55세, 여성인 경우 45세인 자
 - 조기연금 :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완전한 장애로 판단된 남성의 경우 50세, 여성의 경우 45세인 자; 최소 가입기간 8~10년이며 몹시 힘들거나 신체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55세, 여성의 경우 45세인 자
 - 기초연금보험제도를 2011년 이전에 가입하였으며 일반퇴직연령 도달 시 최소 10년 이상, 15년 미만의 가입기간이 있는 자는 기초연금 자격을 갖추기 위해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 가능함. 15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경우, 가입자는 납부를 중단하고 일시금을 받거나, 연금을 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로 이전 할지 결정 가능함
- 노령연금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) : 연금은 비기여 제도와 개인계좌로 구성됨
- 비기여 연금 : 기초연금보험제도 하의 사회보험 노령연금에 대한 권리가 없는 60세에 도달한 자
- 개인계좌 : 최소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며 기초연금보험제도 하의 개인계좌 노령연금에 대한 권리가 없는 60세에 도달한 자.
 - 15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60세에 도달한 가입자는 수급자격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인 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에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일시금 납부를 할 수 있음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기초연금보험) : 연금은 사회보험연금과 의무개인계좌로 구성됨
- 사회보험연금(중앙정부지침) : 완전한 근로 불능으로 판단되어야 하며, 기초연금보험제도 하의 조기 사회보험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어야 함
 - 노동능력사정위원회의 의료 전문가가 장애 정도를 판단함
- 의무개인계좌(중앙정부지침) : 현금급여가 제공되지 않음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기초연금보험) : 연금은 사회보험연금과 의무개인계좌로 구성됨
- 사회보험연금(중앙정부지침) : 사망자가 사망 시 연금수혜자였거나 보험적용대상 근로자였음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미망인(홀아비)과 피부양자 자녀 및 부모를 포함함
 - 장제비 : 가입자 혹은 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직계 가족 구성원의 사망 시 지급됨

- 의무개인계좌(중앙정부지침) : 사망자가 사망 시 연금수혜자였거나 보험적용대상 근로자였음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사망자의 법적 상속인임
- 유족급여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, 개인계좌) : 사망자가 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받을 자격이 있었음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사망자의 법적 상속인을 포함함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기초연금보험) : 연금은 사회보험연금과 의무개인계좌로 구성됨
 - 사회보험연금(중앙정부지침) : 연금은 $\langle \text{전년도 지역 월 평균 임금} + \text{보험료 납부 계산에 사용되는 개인 월 평균임금} \rangle \div 2$ 이며, 해당값에 각 가입기간년수마다 1%씩 곱함
 - 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는 개인 월 평균임금은 지역 월 평균 임금에 연동된 가입자의 월 평균임금임
 - 사회보험과 의무개인계좌연금 합의 최저액은 지역에 따라, 일반적으로 전년도 지역 월 평균 임금의 40~60%임
 - 조기연금 : 연금은 전년도 지역 월 평균 임금, 보험료 계산 시 이용되는 개인 월 평균 임금, 가입기간연수에 근거함
 - 의무개인계좌(중앙정부지침) : 월 급여는 $\langle \text{총 근로자 납부금} + \text{경과이자} \rangle \div \text{계리 월수}$
 - 계리 월수는 가입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56~233 사이이며 도시인구의 평균기대수명과 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됨. 60세에 퇴직하는 가입자에게 계리 월수는 139임. 지방정부는 1997년 의무개인계좌의 도입 이전에 근로를 시작하고 2006년 1월 1일, 또는 그 이후로 퇴직한 근로자의 전환을 지원함
 - 의무개인계좌에서의 월 급여가 고갈된다면, 지역 공동 사용 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됨
 - 사회보험과 의무개인계좌연금 합의 최저액은 지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년도의 지역 월 평균임금의 40~60%임
 - 조기연금 : 월 급여는 $\langle \text{총 근로자 납부금} + \text{경과이자} \rangle \div \text{계리 월수}$ 임
 - 가입기간 15년 미만의 가입자에게는 계좌 잔고를 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로 이전하지 않는다면, 계좌 잔고 금액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노령연금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) : 연금은 비기여 연금과 개인계좌로 구성됨
 - 비기여 연금 : 월 최소 88위안(yuan)이 지급됨. 몇몇 지역에서 연금의 양은 나이와 함께 증가함
 - 개인계좌 : 월 급여액은 $\langle \text{가입자와 정부 보험료 납부금의 총액} + \text{경과이자} \rangle \div \text{계리 월수}$ 임
 - 계리 월수는 139이며 도시인구의 평균 기대수명과 금리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됨
 - 개인계좌에서의 월 급여가 고갈된다면, 지역 공동 사용 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됨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기초연금보험) : 연금은 사회보험연금과 의무개인계좌로 구성됨
 - 사회보험연금(중앙정부지침) : 전년도 가입자 월 평균임금의 40%이 지급됨
 - 최소 연금액은 지역 생활수준에 따라 지방 및 지역 정부에 의해 정해짐
 - 의무개인계좌(중앙정부지침) : 현금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기초연금보험) : 연금은 사회보험연금과 의무개인계좌로 구성됨
 - 사회보험연금(중앙정부지침) : 생존하는 피부양자 수에 근거하여 사망자의 최종 월 임금을 기준으로 6~12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 - 장제비 : 지난 해 지역 월 평균 임금 2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미망인(홀아비), 자녀, 부모, 조부모에게 지급됨. 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직계 가족 구성원 사망 시, 사망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지난해 지역 월 평균 임금 혹은 기업 임금의 33~50%이 지급됨
 - 의무개인계좌(중앙정부지침) : <총 근로자 보험료 납부금 + 경과이자> 해당 금액 지급됨. 가입자가 일반 퇴직 연령 이전에 사망할 시,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 사망자 개인계좌의 근로자 보험료 납부금 잔고가 지역 공동 사용 기금으로 이전됨
- 유족급여(농어촌 및 무임금 도시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, 개인계좌) : <가입자 및 정부 보험료 납부금 총액 + 경과이자 - 사망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
7 관리운영기관

-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(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) 산하 연금국 및 지방사회보험국(Department of Pensions and Department of Rural Social Insurance)
 - 전반적인 관리 감독
 - <http://www.mohrss.gov.cn>
- 지역사회보험국(Provincial or local social insurance agencies)
 - 퇴직연금 공동기금과 개인계좌 관리 운영. 지역사회보험국은 점차적으로 정부의 기금과 통합되고 있음
- 지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담당
 - 관할권 내의 지역 공동 사용 기금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만 하는 규제 기금(특별 별도적립기금) 관리
- 지역사회보험국은 또한 시골지역과 주기적 급여가 없는 도시민들을 위한 연금제도 관리
- 국가세무총국(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) 하에 있는 지방세권
 - 보험료를 징수함(2019년 1월)
 - <http://www.chinatax.gov.cn>

<2018년 ISSA 자료>